
202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2021. 2. 2.



국민권익위원회

순 서

I. 반부패 정책 성과와 추진여건	1
II. 202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9
1.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공직사회 행위기준 마련	12
2.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15
3.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18
4.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예방기능 강화	21
5. 부패·불공정 현안 실태점검 등 대응 강화	23
6.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 강화	25
7.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26
8.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추진	28
9.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	30
10.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36
11. 국제사회에 청렴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각인	39
12.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및 홍보	40
13. 신고 활성화로 부패·공익침해행위 발생 차단	43
14.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44
1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45

Ⅲ. 협조사항 49

1.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 감사 면책 51
2.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53

[참고자료]

1. 임직원 행동강령 - 행동강령 표준안 비교표 서식 57
2.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개정내용 58
3. 2021년 공공기관 사규 점검 대상 기관 59
4.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체크리스트 60
5. 국내 교육훈련기관 현황 61
6.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책제안별 소관기관 현황 62
7. 국제반부패아카데미 (IACA) 교육프로그램 안내 63
8.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개요 및 정책제안 64

- 붙임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71
2. 과제별 업무담당자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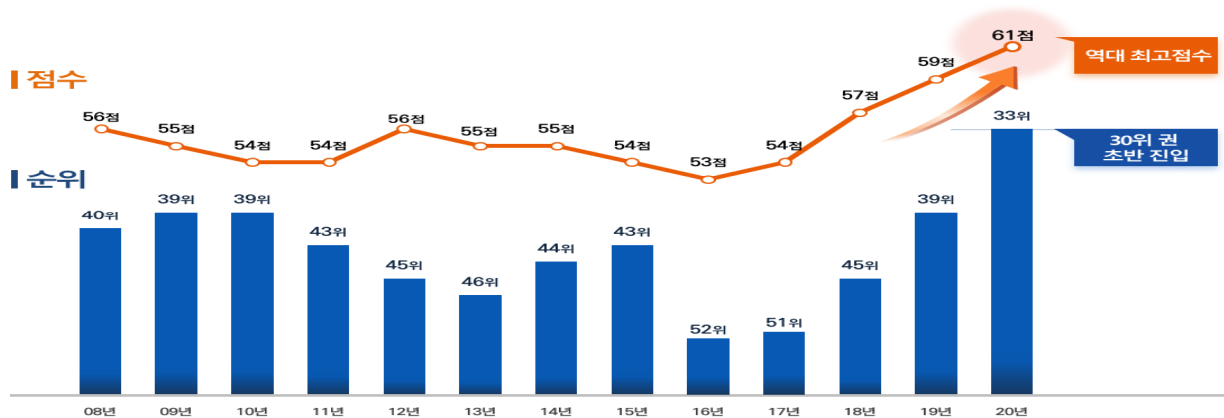
반부패 정책 성과와 추진여건

I. 반부패 개혁 성과와 개선 요인

1 우리나라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평가 개선

□ '20년도 국가청렴도(CPI) 평가 결과

-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2점 ↑), 180개국 중에서 33위(6위 ↑)
 - 역대 최고 점수 기록('95년~)을 발판으로 '22년 20위권 청렴선진국 도약
 - ※ 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전년대비 4단계 상승, OECD 평균 점수는 66.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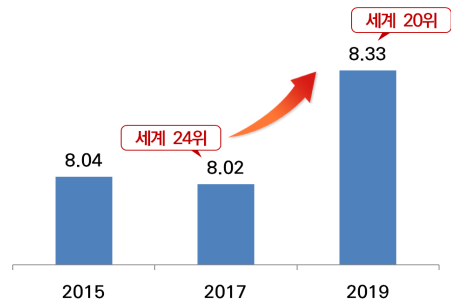


※ 국제평가기관 최근 주요 논평

기관명	주요 내용
정치경제위험 자문공사(PERC) * 홍콩소재 국제 컨설팅트사	• 2020 아시아부패지수 관련('20.3월) - 권익위가 기울여온 반부패 노력으로 인해 정부 부처별로 부패 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이어지고 있음
베텔스만 재단(BF) * 독일소재 비영리 공익단체	• 2020 지속가능지수 관련('20.10월) - 청탁금지법 등 과거 몇 년간 행해진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한국의 선물주기 관행을 뿌리 뽑고 있음

- (공공청렴지수) '19년 공공청렴지수*(IPI)
117개국 중 20위, 아시아 2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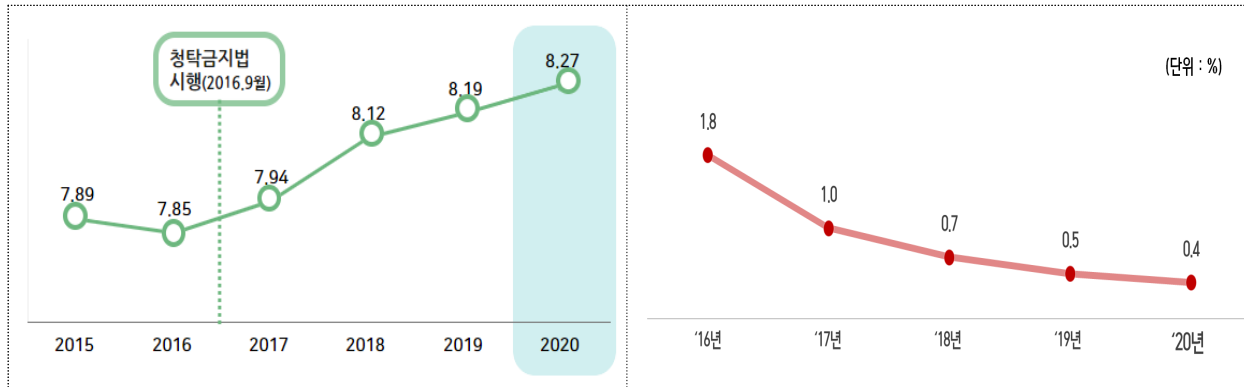
*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하는 국가별(117개국) 부패통제 현황·발전 평가



□ 공공기관 청렴 수준도 꾸준히 개선 ('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추정)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점수가 4년 연속 상승하였고, 특히 '20년에는 모든 기관유형의 종합청렴도가 상승

※ '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경험한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지속 감소



< 최근 5년간 청렴도 점수 추이 >

< 최근 5년간 부패경험률 추이 >

□ 청탁금지법, 채용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청탁금지법) 국민의 87.8%가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89.4%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

※ 청탁금지법 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권익위·한국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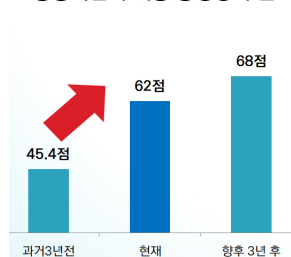
< 청탁금지법 관련 인식도 조사 주요 결과('20.9월) >

- ①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국민 88.1%, 공무원 97.2%, 공직유관단체 96.5%, 교원 94.4%, 언론인 82.1%
- ② 법이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 국민 89.4%, 공무원 96.6%, 공직유관단체 95.5%, 교원 93.8%, 언론인 86.7%
- ③ 직무관련자 관련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감소하였다
: 공무원 85.9%, 공직유관단체 88.1%, 교원 85.9%, 언론인 82.6%
- ④ 법 시행 이후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하였다
: 공무원 80.8%, 공직유관단체 85.6%, 교원 80.0%, 언론인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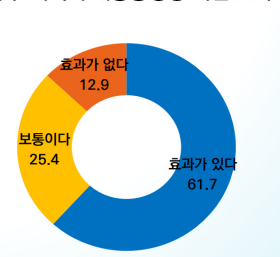
- (채용 공정성 개선)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인식이 개선 ('17년 45점→'19년 62점)되고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다' (61.7%)고 평가

* 권익위 채용공정성 조사, '20.5월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 수준



정부 대책의 채용공정성 개선 효과



□ 지속적 반부패 개혁 노력

- (범국가적 대응체계 구축)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공정과제 발굴·논의 강화(총6회),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반부패 정책방향 제시
 - * (주요 안건) 분야별 전관특혜 근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사교육 불공정성 해소 등
 -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개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12건 제안
- (중장기 전략수립) 범정부 중장기 반부패 개혁 추진체계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18.4월)’ 수립·이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 성과 도출
 - *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등 4대 분야·총 85개 단위과제로 구성
- (법·제도적 기반 강화) 국민 눈높이 변화에 따라 공직자 행위기준 지속 강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월)으로 재정 누수 체계적 대응 강화
 - * (청탁금지법 실태점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18년), 부적절한 공직자 할인·징학금 혜택 개선(‘20년) 등 (행동강령 보완) 이해충돌 방지규정 및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18.4), 갑질금지 신설(‘18.12)
- (K-청렴 확산)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를 최초의 온라인 회의로 성공적 개최(‘20.12.1~4), 프로그램·참가자수 역대 최대로 국제 반부패 논의 선도
 - * UN·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정부, 국제NGO, 다국적기업 등을 포함하는 전 세계 반부패전문가 1만여 명 참석, ‘서울선언문’ 공포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부패 현안 적극 대응

- (생활적폐 개선) 채용비리, 학사비리, 갑질 등(9개 과제) 국민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범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운영(‘18.12월~, 총 9차)
 - * (주요 법령개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유치원3법 등 개정(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직장내 괴롭힘 금지 3법(갑질 근절), 의료법·건강보험법·범죄수익환수법(불법의료 기관 근절) 등

- **(채용비리 근절)** 정부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로 채용비위자 징계·처벌,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실시('17년~, 총 3회)

* (채용비위 적발) '17년 338건 → '18년 182건 → '19년 83건으로 개선 추세
(피해자 구제) '17년 3,245명, '18년 49명, '19년 122명(잠정)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 채용비위 징계시효 연장,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등

- **(공공기관 사규 개선)** 국민 생활 점점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한 부패·불공정 제거를 위해 495개 공공기관 사규 3개년 전수 점검 계획 수립·이행

* ('20년) 69개 기관, 8,393개 사규를 전수 점검, 316건의 개선안 권고 및 360개 기관에 대해 허위 출장·출장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개선안 권고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지속 강화

- **(보호 범위 확대)** 부패행위를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람까지 보호 대상으로 추가('19.10.)하고, 공익신고 대상 법률 대폭 확대*('18.5, '20.11.)

* 공익신고 대상법률 : ('11.) 180개 → ('16.) 279개 → ('18.) 284개 → ('20.) 467개

- **(비밀보장 강화)**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18.5., '20.6.) 및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

* (종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강화) 5년/ 5천만원

- **(보호·보상 제도 강화)**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3개월→1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 상향(20억→30억), 긴급구조금·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도입,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 등

*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시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최대 3천만원 부과

- **(적극적 보호·보상)** 4년간('17~'20년) 205건 보호, 보·포상금 195억원 지급, 법 위반자 고발·징계요구 35건, 이행강제금 8건 부과

* 보호건수 : ('17) 17건 → ('18) 35건 → ('19) 72건 → ('20) 81건

* 보·포상금 지급액 : ('17) 42억원 → ('18) 55억원 → ('19) 43억원 → ('20) 55억원

□ 국가 혁신·도약의 토대로서 반부패·공정 기반 강화 필요

-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확인된 공적 제도의 투명성 및 국민신뢰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완수해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도약을 모색할 시점
- 특히,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 엄단 및 불공정·특권 해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적극적 대응 필요

➡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이행력 제고 등 반부패 입법 완비

□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 근본 대책 마련 등 대응

-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부패 취약분야에서 국민의 추가적 피해와 상실감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방역 정책,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 계약 등에 있어 기존 고질적 부패 취약업무와 코로나19의 부정적 시너지 발생 차단 필요

➡ 국민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점검,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과 역량을 활용한 집중 대응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인식 제고 노력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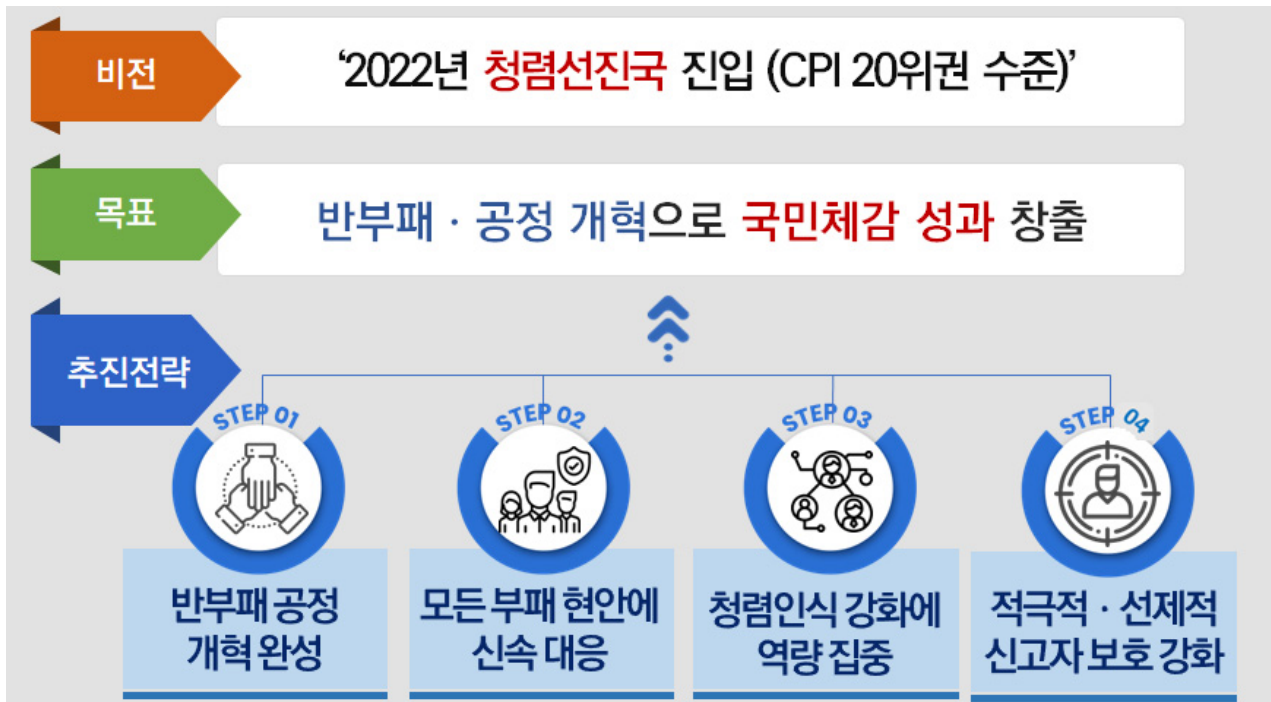
- 그간 반부패 개혁의 성과로 국가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며, 공직자의 청렴성과 윤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준이 높아진 상황
-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이해충돌, 채용비위 및 갑질 등 공직자 관련 불공정 이슈로 인한 반부패 개혁의 성과 훼손 가능

➡ 반부패 정책·제도의 엄정한 운영 및 청렴교육 강화 등 모든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 및 인식 제고 필요



202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II. 202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추진전략	주요 정책과제
① 반부패 공정 개혁 완성	■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공직사회 행위기준 마련 ■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예방기능 강화
② 모든 부패 현안에 신속 대응	■ 부패·불공정 현안 실태점검 등 대응 강화 ■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추진
③ 청렴인식 강화에 역량 집중	■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 ■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 국제사회에 청렴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각인
④ 적극적·선제적 신고자보호 강화	■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및 홍보 ■ 신고 활성화로 부패·공익침해행위 발생 차단 ■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1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공직사회 행위 기준 마련

- ◇ 공직사회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특혜를 차단하기 위한 행위기준 강화
- ◇ 공직자 개개인의 행동강령 내재화를 유도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자발적 행위기준 정립 및 이행노력 지원

□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관행 근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20.6.25. 국회제출)」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쟁점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 방안 제시로 국회 논의를 선도
 - ※ 법안 설명과 함께 고위직 사적이해관계 신고방식 차별화, 조사권 확보 등 정부안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입법 적극 지원으로 법안 완성도 제고
-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홍보 활동 전개(수시)
 - ※ 공중파 뉴스 인터뷰, 주요 일간지 기고, 라디오 시사프로 인터뷰, 이해충돌 사례별 카드뉴스, 유튜브 콘텐츠 등

□ 알기 쉬운 행동강령 만들기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행동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행동강령 수범자인 공직자 대상 홍보 강화
 - 이슈 발생 시 보도자료, SNS 등을 통해 해석 기준, 신고사례를 신속 전파하여 유사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수시)
 - ※ (예시) 퇴직공직자를 통한 로비, 특혜 의혹 등이 이슈화 될 경우 퇴직공직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규정,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해석기준, 신고사례 등 안내
 -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수요자 맞춤형 교육자료 배포(반기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

- 행동강령 조례 미제정 지방의회에 대한 현지 방문 컨설팅으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상반기)

※ 조례 미제정 의회를 방문하여 조례 제정 필요성, 조례 제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조속한 제정 촉구 및 행동강령 운영 관련 의견수렴

< 행동강령 조례 미제정 의회 현황 >

지역	의회명	지역	의회명
서울(8)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경기(2)	의정부, 시흥
		강원(2)	속초, 정선
		경북(1)	영주

※ '20.11월말 기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30개 의회(94.6%)에서 조례 제정

-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를 통한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 대상 행동강령 교육 실시(반기별)

※ 선출직 공직자 위반 빈발 행위, 지방의원 수의계약, 소관 상임위 관련 위원회 활동 등 이해충돌 사례 중심

[협조 요청 사항]

-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 사항 권익위에 제출(전 공공기관)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①행동강령 전문과 ②신·구조문대비표를 공문으로 송부

▶ 제정안인 경우에는 자료①만 송부

(2) 공직유관단체

-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안 초안이 마련되면 ①제·개정안 초안, ②신·구조문대비표, ③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과의 비교표를 공문으로 송부

▶ 제정안인 경우에는 자료①만 송부

▶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참조

▶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과의 비교표는 '(참고1)임직원 행동강령 - 행동강령 표준안 비교표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권익위에서는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회신할 예정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신속한 반영 필요

-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①행동강령 전문과 ②신·구조문대비표를 공문으로 다시 한 번 송부

▶ 제정안인 경우에는 자료①만 송부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협조 (해당기관)
 - ※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세부 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4월, 10월 예정)
- 행동강령 조례 미제정 지방의회 현지 방문 컨설팅 협조 (해당기관)
 - ※ 세부 계획 수립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일정협의 예정(~3월)
- 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이행실태 점검 시 자료 제출 등 협조 (해당기관)
 - 특히, 지자체 등에 대한 실태점검시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해당 관계기관은 제도개선 적극 검토 등 협조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 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기관 송부 시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등 협조 (해당기관)
 - ※ (참고2)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개정내용
- 기관별 행동강령 준수 등 자율적 이행 노력 전개 (전 공공기관)
 -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강령 자체 교육 강화
 -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을 통한 행동강령 위반 예방활동 적극 전개
 - ※ 필요시 점검실적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점검실적 확인 예정
- 행동강령 위반 신고 빈발분야 재발 방지 노력 강구 (전 공공기관)
 - 특히, 출장여비 신청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조례·사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장여비 허위·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직자 교육 및 자체 점검 강화

2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 ◇ 부적절한 관행 개선, 입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 ◇ 청탁금지법 오해 바로잡기 등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한 교육·홍보 중점

□ 청탁금지법 사각지대 입법 완비

- (정부입법) 부정청탁 대상직무 보완,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21.1월, 법제심사 중)
- (의원입법) 과태료 부과 주체를 권익위로 변경 등 의원발의안의 신속한 논의 진행을 위해 입법과정 적극 대응

< 주요 청탁금지법 개정안 추진 현황 >

구분	개정 내용	추진 일정
정부입법	▪ 부정청탁 대상 직무 보완,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준용 규정 등 명확화 ▪ 소속기관장의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 통보 누락 시 감독 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등의 통보 요구 근거 마련	· 법제심사 중(1월말) · 국회 제출(2월)
의원입법	▪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 행위에 대해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현행 법원) ▪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통보 내용에 대한 설명 요구 근거 마련	· 유동수 의원발의(11월) · 박영순 의원발의(8월) · 이정문 의원발의(12월)

□ 청탁금지법 오해 바로잡기 추진

- 법에 대한 오해나 규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오보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 배포, 수정요구 등 즉시 대응
- 공직자·국민이 가진 오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사항을 중심으로 보도자료·영상·카드뉴스 등 활용·전파

※ 예시) 연말연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홍보 협조 요청(청탁 금지제도과-4560, '20.12.29)

- * 직무와 무관하여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수수 허용 예시
 - ① 업무상 만날 여지가 없는 학교 동창인 공직자 친구(자녀 포함)의 경조사
 - ② 명절에 공직자인 친척에게 주는 한우
 - ③ 같은 기관 내 인사평가감사 등에 연관되지 않은 상급자와 하급자가 주고받는 식사

□ 현안 이슈 실태점검, 공공기관 신고 처리 현황 분석 강화

- 언론·국회 지적 등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이슈, 공직자등에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안 마련
 - 일선현장 빈발 위반행위 등 현황 점검, 관련 유권해석례·제재 사례 등 유의사항 전파 시 즉각 확산
 - ※ 예시) 학교 차지·불법찬조금 수수,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 수련원 등 휴양시설 이용 특혜 제공, 체육회의 종목단체 회비 부당 사용 등 금품등 수수 관련 등
- 각급 공공기관 제도 운영 현황 실태점검(연 1~2회)으로 예외사유 임의적 해석으로 종결 등 부적절 신고처리 사례 시정조치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처리,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 서면점검, 현지 방문 등을 통한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 ※ 중점 점검사항)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 대신 가벼운 징계 또는 종결로 처리,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양벌규정 적용 누락 등
 - 지방의회의 경우,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점검 및 미흡 기관 지정 조치 등 제도 운영 체계 정립 병행 추진
 - * '20.6월 기준 지방의회 243개 중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이 미흡한 기관은 47개 (미지정 29개, 의장 지정 13개, 지자체 감사실 지정 5개)

[협조 요청 사항]

-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설명회 등 교육·홍보 적극 참여(전 공공기관)
 - 기관 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법 제20조),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연 1회 교육(시행령 제42조) 실시
 - 각급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제도 운영 설명회 참석(연 9회)
 - ※ 코로나19로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혹은 집합 교육 실시 예정('21.1월, 온라인 설명회 4회 기 개최)이며, 세부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공문 시행 예정
 - 국민권익위 교육·홍보자료(포스터, 카드뉴스 등)를 활용하여 소속·산하기관, 직무관련자 등에 법 주요내용 확산(수시)
 - ※ 각종 자료는 제작 즉시 국민권익위 누리집 게시(국민권익위 누리집 >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 각급 공공기관 대상 실태점검 및 현지 방문 협조(전 공공기관)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처리,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에 대한 서면점검 시 자료 제출(연 1~2회) 및 현지 방문 협조(하반기)
 - ※ '20.12월까지의 현황은 '21.1.29.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현지 방문 대상은 추후 개별 협의 예정
 - 공직자등에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 청취 등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의 협조(수시)

3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 ◇ 공공기관별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여 반부패 정책 수립·추진의 효과성 향상
- ◇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고, 청렴 정책·문화 확산

□ 청렴도 측정의 신뢰성·타당성 제고

- (측정대상) 기관별 부패 현황 등을 고려, 대상기관 및 측정 업무 조정
 - (대상기관) 부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기관 대상 집중적 측정방안 검토(3월)
 - ※ 인구 2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의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 등 측정 확대 검토
 - (대상업무) 기관별 업무 관련 부패취약 분야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측정 대상 업무 조정(상반기)
- (측정모형) 청렴도 측정제도 도입 20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직사회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제도 개편(안) 검토(상반기)
 - ※ 객관적 지표 강화 등 측정 객관성 제고 방안 검토 등
- (현지점검) 조사표본 관리, 호의적 답변 유도, 명부 조작·누락 등 신뢰도 저해행위 점검과 기관 의견 수렴 등 병행(상·하반기)
 - ※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점검 대상, 추진 일정 및 방식 추후 확정 예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한 반부패 체계 구축 강화

- (평가대상)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의 시책평가 대상 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에서 40만명 이상으로 확대
 - ※ '20년에는 기초지자체 인구 50만명 이상은 전수, 인구 50만명~30만명은 종합청렴도가 낮은 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으로 선정

- (평가체계) 국민 관심이 큰 부패현안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지표를 신설하고,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지표는 강화하는 방안 검토

□ 국민 체감의 반부패 성과 확산 및 홍보

- 반부패 성과 확산을 위해 전년도 우수사례 뿐 아니라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시책을 총 망라하여 우수시책 발굴·홍보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공공기관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

□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등 지원

- (그룹 컨설팅 강화) 지역·규모·유형·업역을 고려한 최적화된 그룹 구성, 멘토-멘티기관 회의, 우수시책 공유 등 실시

※ 권역과 규모·유형·업역이 유사한 청렴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이 그룹 구성 (10개 그룹 / 약 20개 기관 대상)

- (부패 현안대응 컨설팅 도입) 중대 부패·불공정 현안 대응에 반부패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컨설팅

※ 부패 현안 발생 시, 권익위 관련부서 내 합동점검·컨설팅팀을 구성하여 해당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컨설팅 등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2~3월) 및 실시계획(시책평가 3월 말, 청렴도 6월 말) 통보에 따른 자료와 의견 제출
 -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안) 관련 기관 의견 제출(3월 중)
 - '21년 청렴도 측정 방향 및 측정업무 등에 대한 의견 제출(3~5월), 조사대상 명부 등 자료 제출(7~8월)
- ※ '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담당자 워크숍'은 감염병 확산 상황의 전개에 따라 추진 일정 및 방식을 추후 확정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19년까지는 2~3월 중 개최, '20년은 감염병 확산에 따라 서면 방식으로 대체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후속조치 실시
 - '20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평가결과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3.31.)
 - '21년 평가 결과 우수기관 공로자 추천(12월)
 - ※ 공로자 추천 시 부적격자 추천 등 검증이 부실한 경우 향후 3년 간 포상 추천 제한 가능
- 현지점검 대상기관 선정 통보에 따른 점검 사항 협조(상·하반기)
 - ※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점검 대상, 추진 일정 및 방식 등 추후 확정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급 기관에서 추진한 청렴 우수시책 사례 발굴·확산 협조(상반기)
- 청렴컨설팅 운영 협조
 - 그룹 컨설팅 참여기관(멘토-멘티) 단계별 컨설팅 실시
 - ※ 온라인 설문조사, 컨설팅 실무회의, 자문위원 의견 반영 등
 - 부패 현안대응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시, 현지조사 등 협조

4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예방기능 강화

- ◇ 공공부문의 부패와 생활 속 불공정을 야기하는 제도를 발굴·개선함으로써 개방·투명·신뢰 3대 핵심가치 구현
- ◇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 체계화, 이행현황 상시점검을 통해 반부패 제도개선 추진과정의 국민체감도 제고

□ 구조적 부패·불공정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공직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유착을 개선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위한 개방성 제고
 - ※ (예) 건설·계약 등 폐쇄직역 관련 특혜·독점관행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 경제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자금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집행과정의 낭비·누수 차단
 - ※ (예) 정책자금 중복·반복지원 등 정책자금 관리강화, 부실집행된 보조금 환수 등 보조금 관리 투명성 제고
-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불공정한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국민 생활 속 신뢰기반 구축
 - ※ (예) 요양원·요양병원 공공성 강화, 공동주택 비리방지 등

□ 반부패 현안 대응 추진체계 개편

- 각종 신고·감사·예산낭비 사례, 시민단체 제안과제 등의 체계적 분석·검토를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 상시 운영
 - ※ 반부패 유관부서로 구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협업
- ‘과제착수 → 실태적발 → 개선권고 → 이행점검’ 등 제도개선 단계별 홍보를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과 지지 확보
 - ※ 권고완료 과제뿐만 아니라 문제실태 적발 등 추진중 과제도 적시홍보 병행
- ‘권고’ 형식이 아니더라도 조속한 정책반영 및 자율개선을 위해 현안과제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제안’으로 제시
 - ※ (예)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관련 정책제안('21.1월) 등

□ 국민체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후관리 강화

- 권고에도 불구하고 언론, 국회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반부패 현안 과제의 이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점검하고 조속한 이행 촉구
 - ※ ①(언론보도 등 문제포착) 권고 미이행, 부패 발생 → ②(권익위) 이행조치 요구 → ③(소관기관) 조치계획 제출 → ④(권익위) 이행점검 → 우수사례 홍보
- 세부 이행방안 협의 등 맞춤형 이행지원을 위한 이행전략회의·컨설팅, 이행현황 주요 협의체 보고 등을 통해 실질적 이행 및 국민체감 확산

□ 대외 신인도를 저해하는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주요 과제 중 민·관 접점 부패 취약 분야와 기업 경영 등 민간 부문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분야 집중 개선

< 제도개선 현안 과제(예시) >

분야	세부 과제
보조금	▪ 국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 지원 방지, 부실 심사 방지 등 관리 강화
계약·조달	▪ 공공 계약의 경쟁 입찰 확대 등 폐쇄직역에서의 특혜·독점 방지
기업경영	▪ 준법감시인 선관의무·관리책임 강화,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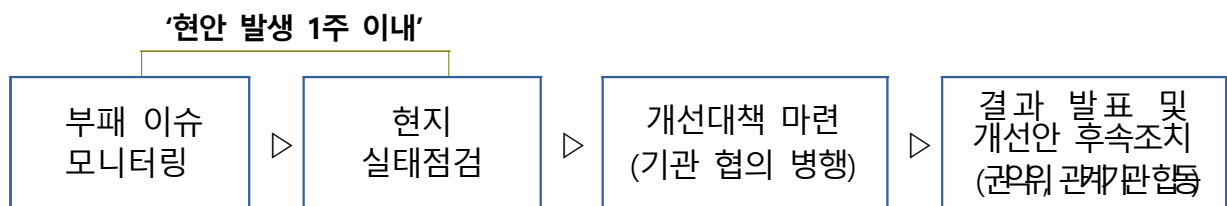
[협조 요청 사항]

- 기관별 권고 이행현황 자체 점검결과 제출(전 공공기관, 반기별)
 - ※ 기관별 자체 점검에 따른 세부 안내는 별도 공문 시행 예정(3, 9월)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 우수 협조기관 연말 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 제공
- 언론·국회 등 제도개선 이행현황 상시 모니터링에 따른 이행조치계획 제출 요청 시 조속한 조치계획 및 최종 이행결과 제출
 - ※ ‘이행현황 상시점검체계 운영’ 세부 안내 별도 공문 시행 예정(2월)
- 대외신인도 개선 분야 권익위 제도개선 이행 및 자체 과제 발굴·개선

□ 부패 현안에 대한 신속·적극적인 대응 강화

- (현안 대응 강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정책수단 및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즉시 대응체계 가동, 실태점검 및 개선안 마련

※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불공정 현안의 경우 권익위 중심의 실태점검 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실태점검 결과 및 관계기관 합동 개선대책 발표



- (청렴 현장 컨설팅) 언론보도, 국회 지적 등을 중심으로 부패 현안 사안별 맞춤형 대응을 통한 종합적 해결방안 마련

구분	추진 내용
현장 출동	▪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 기초 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결책 모색
해결 협력	▪ 유사해석례·가이드라인 제공, 검토의견 제시, 공동 점검 등 기관 자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 지원
대형 과제	▪ 법령·규정 보완, 대규모 전수조사 등이 필요한 과제는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실태조사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부패·불공정 관행 취약분야 실태점검 추진

- (공공재정 합동 점검단) 코로나19 지원금 등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합동 점검단’을 구성, 부정청구 취약분야 집중 점검(2~12월)

※ 코로나19 지원금, R&D(상반기), 지방보조금(하반기) 등 분야에 대해 집중 실태점검

- (실태점검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관련 이슈, 공직자등에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 관행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 및 개선안 마련

※ (예시) 학교 차지·불법찬조금 수수,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 수련원 등 휴양시설 이용 특혜 제공, 체육회의 종목단체 회비 부담 사용 등 금품등 수수 관련 등

- **(공공기관 사규 점검)** 공공기관 사규 전수점검 3개년 계획('20~'22)에 따라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99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민간과의 계약·위탁 등 접점 분야에서 직권·재량남용 소지가 있거나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요인을 중점 점검·개선

< 공공기관 사규 전수 점검 3개년 계획 추진현황 >

점검시기	2020년	2021년	2022년
점검기관수	187	99	209
기관유형	공기업, 지방공단·공사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누적 점검기관수	187	286	495

□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제고 대책 마무리

- **(정기조사)** '20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21년 중, 1,516개 기관),
신규채용·정규직 전환과정의 비위, 제도개선 이행실태 등 중점 점검
-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수조사 시기·방법은 탄력적으로 결정

<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 추진 경과 >

연도(조사기간)	대상기관	조사 결과
'17년('17.10.~'18.1.)	1,190개	▪ 채용비위 338건 적발, 피해자 3,245명 구제
'18년('18.11.~'19.2.)	1,205개	▪ 채용비위 182건 적발, 피해자 49명 구제
'19년('19.12.~'20.5.)	1,212개	▪ 채용비위 83건 적발, 피해자 122명 구제 추진

- **(수시점검)** 채용 요건 일방변경, 채용 특혜 발생 등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현안 발생 시 신속한 현장점검 및 즉시 조치 해결

※ 필요 시 기재부·행안부·고용부·산업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불공정 현안 적극 발굴 및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의제 상정
- 권익위 실태조사(채용실태 전수조사, 공공재정 합동 점검,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실태점검) 시 자료제공 등 적극 협조 및 필요시 부처 합동 현장조사 추진
→ 부처 소관 분야 제도개선안에 대한 적극 수용·이행
- 부처 자체 부패 현안 이슈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리 및 대책 마련
(필요시 청렴 현장 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권익위와 협업 해결)

-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후속조치 및 개선대책 등 추진

□ 2020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추진

- 1차 전수조사, 2차 심층조사 등 정기 전수조사를 적극 추진
 - ※ 전수조사 실시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
- (1차 전수조사) 감독기관 주관으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 채용·전환 과정의 비위·적정성 등 채용과정에 전반에 대한 조사
- (2차 심층조사) 추진단, 주관부처, 감독기관 등이 합동으로 실시
 - ※ 비위험의가 높거나, 주요 제보 위주로 대상기관 선정·조사(100여개 내외)

□ 정기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대책 이행

- 비위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퇴출, 피해자 구제 등 추진
 - (비위연루자) 수사 의뢰 및 징계 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즉시 업무 배제
 - (부정합격자) 검찰 기소 시 즉시 또는 일정절차를 거쳐 퇴출 절차 착수
 - (피해자) 피해자 구제 세부가이드라인('18.5월)에 따라 피해자 적극 구제
 - ※ 추진단에서 후속조치 등 이행현황 지속 점검중
- 산하 공공기관의 제도개선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 '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 사항을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신속 이행

[협조 요청 사항]

- 금년도 정기 전수조사의 적극적 추진 및 협조(전 공공기관)
 - ※ 전수조사 추진 시 인력 파견 협조(경찰청, 고용노동부, 감독부처 등)
- 정기 전수조사 후속조치(비위 연루자 제재, 피해자 구제 등) 및 제도개선 적극 이행 및 점검 협조(전 공공기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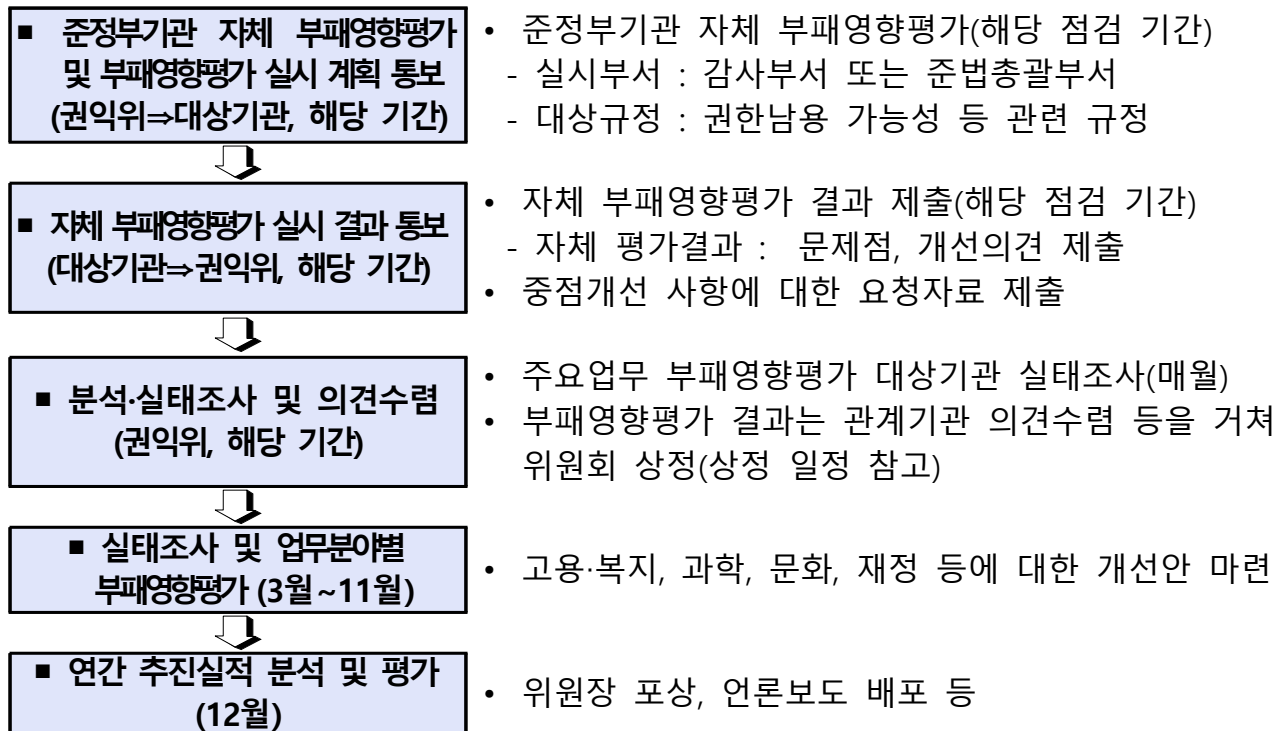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9.4.16) 및 시행('19.10.17)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사규의 일제정비 추진

□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 점검

- 공공기관을 업무 유형별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소관 규정 일제 정비
- 495개 공직유관단체 사규를 전수 점검하기 위해서 기준에 따라 3년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점검
 - 2021년 99개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6개) 점검 실시
 -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 과도한 복리후생, 불공정한 인사규정 등에 대해 중점 점검 실시

< 사규 점검 흐름도 >



< 대상 기관 유형별 분류 >

구분	대상기관	평가일정	상정일정
① 고용·복지 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20개 기관	1~2월	3월
② 과학·정보 분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2개 기관	2~3월	4월
③ 교육·문화 분야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13개 기관	4~5월	6월
④ 국토·안전 분야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3개 기관	5~6월	7월
⑤ 농림·해양 분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14개 기관	7~8월	9월
⑥ 산업·통상 분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6개 기관	8~9월	10월
⑦ 재정·경제 분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	9~10월	11월

※ 평가·상정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부패영향 평가기준에 소극행정유발 가능성을 추가

-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개정(20.9.7.)을 통해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추가
 -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검토

※ 참고2: 소극행정유발가능성 체크리스트 참조

[협조 요청 사항]

- 사규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제출 및 실태조사 협조(해당 공공기관)
- 권익위 사규 개선 권고 이행계획 제출 및 이행 협조(해당 공공기관)
 - ※ 부패방지시책평가 반영 사항
- 자체 부패영향평가 시, 소극행정유발 가능성도 평가기준에 반영

- ◇ 부정청구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나랏돈은 눈먼돈'이라는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재정 관리 강화

□ 주요 내용

○ 정부합동점검단 구성·운영

- 법 시행 초기 제도의 안착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부정청구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
 - ※ 권익위, 경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
-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 명단공표 등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기관별 공공재정 현황 및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금액, 환수율 등 자료를 시스템으로 관리, 대국민 공개(3월~)
 -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 기능을 탑재, 운영('21. 3월~)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추진

- 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적용 사각지대 해소, 제도실효성 확보 등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 개정 추진
- 계약관계 법 적용 대상에 포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근거 신설, 보상금 상환규정 마련, 이자 포함 환수 등
 - ※ 정책연구용역실시(2~6월), 개정안 마련 6월, 국회제출 12월

[협조 요청 사항]

- 일반국민,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내용 및 사례 등 적극 홍보 (전 공공기관)
 - * 사업공고문, 신청서, 사업 홍보물, 안내 자료 등에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 철저
- 공공재정 집행 후 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기관별 자체 점검 실시 등 공공재정 관리 강화 (전 공공기관)
- 부정청구 등 발생 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법적 조치사항 이행철저(전 공공기관)
- 공공재정 집행관련 '이행실태 점검'(2~12월) 시 인력지원, 자료제출 등 협조 (해당 공공기관)
-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3월) 후 공공재정환수법 제25조*에 따른 환수 등 처분관련 자료입력 협조(전 공공기관)
 - * 법 제25조 사항 : 지급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제납처분, 명단 공표 등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의견제출(전 공공기관)

- ◇ 제도 정비와 인식 개선의 동시 추진으로 부패·불공정을 근원적으로 방지
- ◇ 공직자 의무교육으로서 청렴교육 확산, 각급기관의 내실있는 청렴교육 지원 및 대국민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1. 청렴교육 확대

□ 선출직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확대

- (선출직 공직자) 당선자 연수 및 후보자 공천시 청렴교육 이수 추진
 - ※ 국회사무처, 행안부, 인사처, 각급 지자체·지방의회 등 간담회/MOU를 통한 청렴교육 지원 등 추진
- (고위공직자) 장·차관, 실·국장 등 중앙부처 고위직 대상 부정청탁, 이해충돌, 갑질 등 사례 중심 청렴 교육 자료 제작 및 교육 확산
 - ※ ‘기관장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방법’, ‘선물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직무 관련자의 범위’ 등 수요자 맞춤형 사례 교육 자료 작성

□ 전체 공공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 과정 반영 추진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소속 공공 교육 훈련기관 중심으로 청렴교육 과정 별도 개설 확대 추진
 - ※ 중앙·지자체 소속 46개 공공 교육훈련기관 중 청렴교육 단독 과정 운영은 18개 기관, 타 과정에 청렴과목 편성 기관 24개, 청렴교육 미운영은 4개 기관(20.12월)

< (참고) 전체 공공 교육훈련기관 현황(인사처) >

구분	합계	국가기관	시·도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기관 수	112	43	23*	18	28

* 시·도 소방학교(8개) 포함 / 국방대, 별도 교육기관 없는 진흥원 등 까지 포함됨

[협조 요청 사항]

- 각급기관 소속·소관 교육기관에 청렴교육 별도 과정 편성
- 기관장 등 소속 고위공직자, 소관 선출직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강화

2. 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 코로나일상 시대 청렴교육 방식의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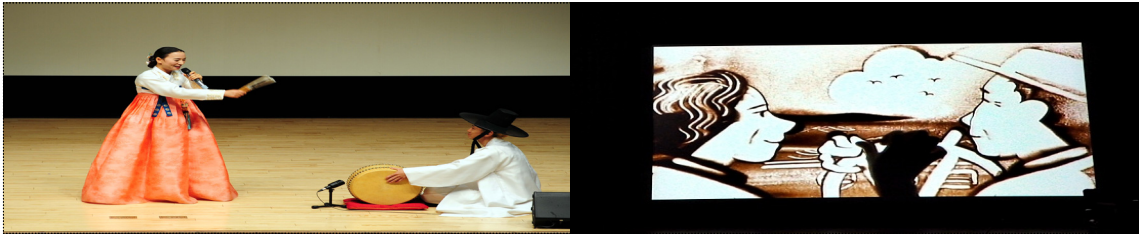
- (비대면 온라인 교육 병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청렴교육 필요성에 따라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
 - 신규자, 승진자, 고위직 등 대면교육 이수 필수자를 위해 화상교육 운영(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 집합 교육으로 운영)
 - 세부 커리큘럼 및 교육일정 등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안내 예정(2월중)

< 청렴연수원 주요 집합교육 과정(안) >

세부분야	교육과정
기관대상 청렴교육	▶ 청렴Live(청렴콘서트) ▶ 지방의회의원 청렴연수과정
청렴교육 의무화 맞춤교육	▶ 청렴리더십(고위직) ▶ 신규자 ▶ 승진자 ▶ 부패대응능력 향상 ▶ 밀레니얼 청렴리더십 ▶ 청렴·감사담당 엑스퍼트
강사양성 교육	▶ 강사양성 기본 ▶ 강사양성 전문 ▶ 청렴교육강사 보수교육
기타	▶ 청렴역량 향상 ▶ 기관 유형별 청렴교육 ▶ 청렴韓 DAY ▶ 민원담당자 역량증진

- (청렴 라이브 과정)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콘텐츠(판소리, 마당극 등)를 활용한 공연형·맞춤형 청렴교육 운영
 - 대상기관 선정 시, 기관장·고위직 공직자 참석률이 높은 경우 또는 지역별 기관 합동교육 추진할 경우 우선순위 부여

< 청렴라이브 교육 현장 >



- **(청렴·감사 업무 담당자 과정)** 청렴·감사 업무 담당자가 실제 기관 업무 및 자체교육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사례, 최신트렌드를 집중 교육 등

< 청렴·감사담당 엑스퍼트 교육프로그램(안) >

- 청렴 역량 : 개인별 청렴역량 진단, 딜레마 상황 토론 등
- 반부패 정책 : 최신 정책 트렌드, 우수기관 실천 사례 등
- 법·제도 : 공공재정환수범 이해,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비교 분석 등
- 교양 : 청렴골든벨, 청백리를 찾아서, 영화 속 청렴스토리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지역 사회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리더십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 워크숍·연찬회와 연계한 청렴교육 제공 가능

< 지방의회 교육프로그램(안) >

- 청렴Live, 청렴서약식, 청렴다짐 과정, 청렴역량 과정, 청렴리더십 과정, 청렴역사탐방 과정 등 각 의회별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편성

- **(사이버교육)** '행정심판 실무 입문' 등 신규·보완 교육 콘텐츠 탑재, 연간 총 11회 운영(2~12월,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

- **(교육콘텐츠 활용)** 비대면 청렴교육 활성화와 각급기관 청렴교육 실시 지원을 위한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완료('20년 말)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 자체 교육 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려 받기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청렴연수원에 공문을 통해 신청할 경우 공유 지정 가능

< 청렴연수원 개발 최신 콘텐츠 목록 >

연번	유 형	콘 텐 츠 명	내 용 요약
1	교육영상물	청 사진 (2019년 제작)	5분 가량의 짧고 강한 전달력을 가진 영상물(4편)
2	교육영상물	책으로 읽어주는 청렴 이야기 (2020년 제작)	아동 대상으로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청렴 가치관을 전달하는 영상물(3종)
3	온라인 공개강좌	MOOC 시즌 1 (2019년 제작)	청렴과 인문학을 연계한 패널간 토크 형식의 영상물(6차시)
4	온라인 공개강좌	MOOC 시즌 2 (2020년 제작)	세계의 청렴국가를 유명 외국인 패널들이 소개하는 영상물(6차시)
5	북 러닝 영상	청렴 북 러닝 (2020년 제작)	청렴 주제와 관련된 책을 분야별 전문가들이 요약하여 전달하는 영상물(4편)
6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영상, 노래, 시 등	'19년~'20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영상분야 수상작(54편)
7	웹 드라마	청렴 웹드라마 '달고나' (2020년 제작)	'20년 제작 중고등 대상 청렴 웹 드라마(4편)

□ 청렴교육 추진실적 점검

- 청렴교육 의무화(부패방지 권익위법 제81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교육운영 실태 점검 실시
 - 2020년도 기관별 청렴교육 추진 실적 취합 (필요시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 '21년 공공기관 청렴교육 실적 현황 공개 등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 추진에 따른 이수율 제고 요청
 - ※ 부패방지의무교육 이수현황 공표 근거 마련, 교육 부실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등 후속조치 근거 마련(「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홍성국 의원발의, '20.10.)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청렴교육 필요성에 따라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
 - 신규자, 승진자, 고위직 등 대면교육 이수 필수자를 위해 화상교육 운영(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 집합 교육으로 운영)
 - ※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이 어려울 경우, 사이버 교육 등 가능한 방법 이수

[협조 요청 사항]

- 청렴연수원 운영 교육 과정 참여 및 청렴콘텐츠 적극 활용
 - 실시간 온라인교육, 청렴라이브(Live), 지방의회 및 고위직 과정 등
 - * 별도 수요조사(2월) 및 매월 초 교육과정 안내 예정
 - 청렴콘텐츠는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유튜브 권익비전, 공유 클라우드 접속 등으로 이용 가능
- '20년도 교육운영 실적 청렴e시스템 입력(제출) 협조(全 공공기관)
 - ※ 미제출기관 및 실적보완 필요기관 실적 제출 요망(즉시)
- '21년도 신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부패방지 의무교육 등 안내 및 교육 지원 협조
- 기관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교육강사를 활용(全 공공기관)
 - 청렴교육 전문강사·소양강사(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평가를 합격한 소속직원 활용
- 청렴·감사 업무 담당자는 청렴연수원 '청렴 엑스퍼트 과정' 입교 독려(신규보직자 필수)

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홍보 및 참여 활성화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 모든 국민이 청렴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표출하고 능동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등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유도

- 각 분야별 입선 이상 수상자에게는 상장(위원장) 및 상금 수여

< 청렴콘텐츠 공모전 >

- *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식의 청렴 콘텐츠 공모
 - (수기)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양심 관련 이야기 등을 담은 수필
 - (영상)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 등을 소재로 제작한 영상(5~10분)
 - (웹툰·카드뉴스)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 또는 청렴 사연을 소재로 그린 만화 또는 카드뉴스
 - (노래) 트로트, 랩을 작사·작곡하여 동영상으로 제작
 - (시) 청렴 가치에 대한 재해석 등을 운문형식으로 표현
- ★ 세부 일정 및 분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별도 안내 공문 참조

- 다양한 반부패·청렴사례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 대상 포스터 배포, SNS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적극적 홍보 및 참여(全 공공기관)
 - 각급 공공기관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에 공모전 안내 배너 설치, 청사 내 게시판 등에 포스터 부착 등
 - 양질의 사례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해 소속직원 참여 유도
 - ※ 세부 계획 및 홍보 협조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 입선 이상의 우수성과자에 대해 상장·상금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 우수 청렴공모전 콘텐츠 활용도 제고
 - ※ 음원은 구내방송 등에 적극 이용, 자체 청렴교육 시 청렴콘텐츠 송출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사회협약 확산·이행 등을 통한 반부패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청렴사회 분위기 조성 및 국가청렴도(CPI) 상승 견인

□ 반부패 거버넌스를 통한 반부패·청렴 논의 및 청렴실천문화 확산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한 반부패 관련 정책의제 발굴·제안(연중)

- 시의성 있는 주요 반부패·청렴 현안을 발굴하여 의제화하고 정책제안을 발표를 통해 국민적 관심 유도

< 민관협의회 논의 의제(예시) >

- ▲ 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도입
- ▲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 ▲ 학생 참여를 통한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 ▲ 지방자치단체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 ▲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계약 내실화

- 민관협의회 결정사항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상정·논의, 각 부처와 공유가 필요한 안건은 관계기관에 전파 확산

○ 공공·민간분야 및 지역의 청렴문화 확산

- 공공기관 협력사(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생워크숍 시 윤리경영 교육 시행(연중)
- 지역별,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이행에 대한 자율적 점검 및 평가(연중)
 - ※ (협약기관)전문가 평가와 만족도 조사 → (권익위)부패방지시책평가 반영
- 반부패 및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발굴 지원
 - ※ 민간단체 대상으로 사업공모·심사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
- 청렴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및 청렴정책 모니터링(연중)

□ 17개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연계, 청렴문화 확산

- 17개 시·도 민관협의회 참여 기관·단체 대상 방문 컨설팅 실시
 - 청렴문화 확산 우수사례, 청렴사회협약 이행·점검·평가 등 설명·공유, 운영 애로사항 청취 등
- 17개 시·도별 청렴정책 보고회 개최 추진
 - 시기 :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시
 - 참석 : 시·도 협의회 위원+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의장
 - 주관 : 각 시·도 협의회(신청한 시·도 우선)
 - 내용 : 청렴문화 확산 우수사례 발표, '시도 협의회 주요 청렴정책 및 협력사항 등 논의
- 기관·단체가 보유한 미디어 플랫폼(유튜브, SNS, 전광판 등), 주민센터,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 추진
 - ※ 자치단체(지방·교육),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중앙부처 등 전 공공기관 청렴홍보

□ 청렴·윤리경영 인증 모델 개발·도입

- 청렴·윤리경영 제도 도입 등 민간부패 개선방안 연구용역
 -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관련 제도 운영사례 분석, 청렴·윤리경영 인증지표 개발 및 강화된 자율준수프로그램(CP지표) 마련
 -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인증 수행체계 방안 등 관련 법·규정 마련
- 용역결과 활용 : 청렴·윤리경영 제도의 (시범)운영 추진
 - 공기업, 기업 등 대상 협의를 통해 CP 도입 시범적용
 - 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 이후에는 본격 운영 실시
 - ※ 공·사기업의 신청을 받아 시범 적용하고, 공기업은 부패방지시책평가 시 점수 부여 예정

□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및 제도 정비

- 온라인 워크숍 및 컨설팅 강화를 통하여 기관별(지자체·중앙행정·공직 유관단체) 특성 및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확대
 - ※ 기존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3→4회, 4월 6월 8월 10월 예정)
- 우수기관과 멘토링 등 기관 간 교류협력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 공유를 강화하고, 활동방향의 적정성 점검
 - ※ 수요조사(3월) 통해 우수기관(20년 시책기준)과의 멘토 스쿨을 통한 교류협력 지원
- 기관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제도 정비 실시
 - ※ 운영실태 점검(명칭, 운영근거 등 현황조사, 3월 중) 및 실무자 의견청취(상반기)
 - ※ 우수사례 현행화 등 제도 운영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배포(하반기)

[협조 요청 사항]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정책제안 해당기관 적극 검토(해당기관)
- 기관별 청렴실천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적극 전개(전 공공기관)
 - ※ 청렴콘텐츠 기관매체 등에 전방위적 홍보
-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및 제도 정비 협조
 - ※ 제도 운영 현황 조사 적극 협조
- 공공기관 협력사 상생워크숍 시 윤리경영 교육실시 협조
 - ※ 권익위에서 강사 및 커리큘럼 지원

- ◇ IACC의 성과와 한국의 우수 반부패 사례를 국제사회 적극 전파
- ◇ 아시아·아랍권 협력에서 더 나아가 반부패 지원을 전 세계로 확대

□ 주요 내용

- 국제반부패회(IACC)의 성과를 국제 반부패라운드에서 공유·전파
 - 제19차 IACC(20.12.1~4, 화상회의) 개최성과와 의미를 TI와 G20, APEC, OECD 등에서 공유·전파하여, CPI 제고의 계기로 활용
 - ※ IACC 회의 내용, 성과, 온라인 운영 노하우를 포함한 영문백서 제작
- UN반부패협약 2주기 이행점검에 대한 대응 및 성과 공유
 - 2주기 점검('19~'21)은 협약 2장(부패예방), 5장(자산회복)에 대한 이행 점검으로 법무부·외교부 등 12개 부처와 공동 대응 중
 - ※ 코로나19로 인해 마지막 단계인 현장실사가 올 3월 이후로 연기
- 최근 남미·아프리카, 국제기관 등의 반부패 협력 요청 증가를 반영하여 모든 대륙으로 반부패 기술지원을 확대
 - ※ 화상회의·IACC 플랫폼 등 활용하여 대상자 및 지역 제한 완화

[협조 요청 사항]

- UN반부패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협약 이행점검 및 반부패라운드 이행 관련 자료 제출 및 관계부처 회의 참석 협조
 - ※ 외교부, 법무부, 금융정보분석원, 인사혁신처, 행안부, 기재부, 조달청 등
- 반부패기술지원 사업 관련 강의 및 관련 자료제출 협조
 - ※ 대검찰청, 인사혁신처, 조달청, 관세청 등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프로그램 홍보 협조(전 기관)

- ◇ 신고자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위원회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 확보를 통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신속하고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

-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제도 보완·확대)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신고에도 제도 도입
 - * 부패신고와 법상 불이익조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신분보장조치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
- (신고자 신속 보호)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 비밀보장의무 위반 조사 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사 범위 확대* 및 제재규정(과태료) 신설
 - * (부패신고) 현행 : 관계기관 → 개선 : 관계기관·단체·기업, 참고인 등
 - (공익신고) 현행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개선 : 관계기관·단체·기업, 참고인 등
- (신분공개 피해 방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 위원회가 관련 기사 게재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신고자 보호결정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

- (이행절차 간소화)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간소화
 - *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의견제출 기회를 2회에서 1회로 제한
- (이행력 확보)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명단공표 근거 신설
 - * (현행) 매년 2회, 이행 시까지 회당 최대 3천만 원 → (개선) 최대 5천만 원

- (징계제도 개선) 중앙부처·지자체·공직유관단체 대상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여부 실태조사 후 징계제도 개선 권고
※ 실태조사(2~5월), 개선안 마련 및 관계 기관 협의(6~8월), 개선 요청(9월)

□ 기관간 협업을 통한 신고자 보호제도의 전면적 홍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법 시행('11.9.30.) 이후 성과분석,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자체 등 공익신고기관 홍보채널 등을 활용한 시행 10주년 대대적 홍보(8~10월)
- (홍보방식 다각화) 슬로건 공모를 통한 포스터·리플릿 제작, 사례* 중심의 영상물·웹툰 제작(~9월), 기관별 직원·시민 대상 비대면 교육 지원을 위한 시청각 교육자료 제작(4~6월)

* 주요 공익신고, 고액 보상사건, 신고자 보호제도 위반으로 인한 처벌사례 등

<참고> 신고자 보호 강화 관련 법개정 추진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추진 현황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 (기존 284개 →467개로 확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1.20.)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권익위 요구 없이도 처분청에서 자체 책임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고·명예훼손 등 신고 관련 모든 쟁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사유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2월, ‘21.1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 보완·확대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 기사 게재 중단 등 요청 근거 마련 등	입법 추진 예정('21년)
신고자 보호결정의 이행력 강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간소화 및 금액 상향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 명단공표 근거 신설	입법 추진 예정('21년)

[협조 요청 사항]

- 기관별 공익신고 관련 홍보물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내용(467개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반영·최신화(전 공공기관)
-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안정적 시행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기관 릴레이 간담회 개최 협조(대상법률 소관 중앙부처, 2월중 수요조사 예정)
 -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기관별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제명변경, 분법, 통합, 폐지 등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개정 시 타법개정 협조(중앙부처)

<예시> 부칙

제1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홍보 협조(전 공공기관)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관련 기관별 자체 홍보자료 및 보도 자료 제작·배포 시 권익위 사전협의 협조
 - ※ 기관별 홍보자료에 법개정 사항 등이 최신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확한 홍보자료 제작을 위한 지원 예정
- 공익신고제도 운영현황 및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기준 자료제출 협조(해당기관, ~2월)

- ◇ 부패·공익신고 제도, 주요사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효과 도모

□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및 사례홍보 강화

- (집중신고기간 운영) 시기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패·공익 침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분야(예시)	신고대상	시기
권력형 부패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등	1.22.~4.21
정부보조금	코로나-19 지원금, 연구개발비, 지방보조금 등	3~5월
신규 공익침해행위	병역법, 대리점법, 수입식품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위반 행위	5~6월
안전 분야	건설 자격증 불법대여,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9~10월

* 현안이나 이슈가 되는 사안 발생 시 집중신고기간을 추가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사례홍보 강화) 중요사건 조사결과, 신고자 보호제도 위반 처벌사례, 고액 보상사건 등 홍보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

※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병행

-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유가보조금 등 주요 부정청구 사례 관련 보도자료 배포, SNS 홍보 실시

* 어린이집연합회(보육보조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유가보조금) 등 공공재정 수급 직종별 협회·단체 대상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협조 요청 사항]

-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 홍보 (전 공공기관)
- 부패·공익 등 신고사건 조사처리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해당기관)
- 이첩·송부사건에 대한 소청·소송 등에 따른 실질적·최종적인 조사결과 제출 협조 (해당기관)

- ◇ 신고자 보호제도의 적극적인 운영, 신고자 보·포상금 적시 지급 등을 통해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

□ 신고자 보호체계 강화

- (사전보호 전담제) 잠정적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급박한 신변보호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사전보호 전담 조사관 지정 등 적극 보호조치
- (보호조치 결정 이행 강화)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즉시 부과 및 추가 불이익 발생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보·포상금 내실화 및 체계적 사후관리

- (보·포상금 적기 지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확대, 공공재정 환수 신고 건수 증대 등 보상금 외연의 확대에 대응하여 법정처리기한(90일) 준수 및 적절한 보상금 산정·지급으로 보상제도의 내실화 도모
- (포상금 지급 확대) 위원회 외부 기관에서 접수·처리한 신고 중 공익 증진에 대한 기여도 높은 신고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금 지급
 -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9.10.17. 시행)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정('20.1.1.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에 부패·부정청구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가능
- (체계적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상금 상환 현황, 보상금 일부 지급 건에 대한 추가지급 요건 완성여부 등 지급 결정 후 사후조치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행

[협조 요청 사항]

- 보호조치 결정 등 위원회 결정사항 이행 (해당 공공기관)
-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처리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전 공공기관)
- 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 (해당 공공기관)
- 부패청탁 및 공익신고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전 공공기관)
-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금의 적기 납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 ◇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취업제한 위반자 발생 사전 차단
- ◇ 취업실태 점검 강화를 통한 불법 재취업자 적발 및 제제조치 적극 실시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체계 재정비

- 비위면직자등 취업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전심사제 도입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여부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위해 ‘비위면직자등 취업심사위원회’ 설치
-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취업제한되는 공공기관에 국공립학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취업제한제도 정비
 - ※ (취업제한 안내현황)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비율은 '15년부터 '19년까지 최근 5년간 위반자 기준 37%(145명 중 54명 안내 실시)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
 -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21.1.8, 개정안 국회제출)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 (관리 사각지대 개선) 비위면직자 발생시 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및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시 비위면직자 확인 의무화
 - ※ 취업제한 대상여부를 채용시 사전 확인토록 하여 위반자 양산 방지
- (점검강화) 연금제한자 전수조회(최근 5년분), 범죄경력조회 등 자료 취합·분석을 통해 점검대상자 확인 강화(상반기)
- (실효성 확보) 언론, 법원 판결문 등 모니터링을 통해 비위면직자 등 현황자료 미제출 사례 실태점검 등 대응방안 강구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사전 확인 관리 및 지원 강화

○ 비위면직자등 취업시 사전확인요청 및 사전심사 활성화 지원

- (문제점)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안내 및 취업제한위반 점검·관리 미흡에 따라 대상자의 취업제한 사전 확인 요청 저조
 - ※ 법령상 공공기관은 대상자의 취업제한 확인 임의적 요청에 대한 확인 및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권익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개선방안) 공공기관은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안내·관리를 강화하여 사전확인과 사전심사를 활성화하고, 판단 곤란시 권익위 적극 지원
 - ※ 법 개정 전이라도 위반자 발생 방지를 위해 각급기관의 사전 취업심사 요청 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법률자문 등 적극 활용 검토의견 제시 및 맞춤형 지원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협조 요청 사항]

- 비위면직자등 취업시 사전 확인 활성화 및 지원 강화
 - 공공기관은 취업제한대상자 안내·관리를 강화하여 사전확인 및 사전심사를 활성화하고, 판단곤란 요청시 권익위 유권해석 등 적극 지원
-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실시(전 공공기관)
 -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안내 실시 증빙자료(수령증 등) 5년간 보관
 - ※ 취업제한제도 미안내로 인해 취업제한 위반으로 해임·고발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을 상대로 민원, 소 제기 등 문제제기 가능성 사전 예방
- 공공기관 채용규정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 규정 및 채용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공공기관 재취업 차단(전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채용시(정규·계약직, 공공근로 등)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시스템’, 원 소속기관 확인으로 채용후보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 취업제한제도 교육·홍보 실시(전 공공기관)
 - 평소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교육(퇴직 후 형선고시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등 명단 관리 철저 및 발생 현황 통보(전 공공기관)
 - 청렴포털에 상·하반기 각 1회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 명단 취합·입력시 제출기한 엄수 및 부패행위 등 증빙자료 제출
 - ※ 퇴직공직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거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급여 제한자로서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명단 제출
 - ※ 처분변경, 소송결과 반영 등 취업제한대상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사항 입력
- 취업제한 위반여부 검토 철저 및 취업실태 현장점검 협조(해당기관)
 - 실태점검 관련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요청시 사실관계 철저히 검증하여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적시 제출
 - ※ ‘취업제한 위반 없음’ 회신기관 중 검토가 부실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퇴직 전 기관과 재취업기관간 업무관련성, 부패행위관련성 등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취업제한 위반 여부 심층 검토



협 조 사 항

1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 감사 면책

1. 기본방향

-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자체가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임
- 이에 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해당기관은 자체 감사 시 해당 공직자의 책임을 면제함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3.14), '적극행정 추진방안' 중

-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감사 면책

2. 주요 내용

- 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각급 기관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함

* 시정권고 :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견표명 :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는 책임 면제가 가능*함에도 각급기관에서는 감사 우려를 이유로 권고 수용 및 이행에 소극적

* 국민권익위 권고는 국회,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15인의 위원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결정

[협조 요청 사항]

○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

- 권익위 권고 등의 이행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로 적극 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①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②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③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각 기관별 자체 감사 또는 적극행정 규정에 반영

중앙행정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37조(면책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자체 사례 :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은 대상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1.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권익 적극구제 필요

※ 지방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관

2. 주요 내용

- 지방옴부즈만이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수용성 증대
 - 원처분 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원처분 부서가 재차 당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순 해소
- 지방옴부즈만은 의견표명 기능이 있어 행정기관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가능
 - 행정소송 등 사법구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체 시정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서민을 위한 제도
- 민원처리의 기본법령인 「민원처리법시행령」에 고충민원 처리기관으로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 포함(시행 '19.6.4.)

[협조 요청 사항]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지방옴부즈만 적극 설치

참 고 자 료

(기 관 명) 임직원 행동강령 - 행동강령 표준안 비교표

행동강령 표준안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u>관련되는</u>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u>법인·단체</u> 를 말한다. 라. ○○○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u>법인·단체</u> <추가>	제2조(<u>용어의 정의</u>)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u>관련된</u>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u>단체</u> 를 말한다. 라. <u>공사와</u>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u>단체</u> (<u>하도급자를 포함한다</u>) 제9조(업체 임직원 면담 보고) 공사 임직원은 공사 소관 사규에 의해 조사 중인 개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사무실(출장지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할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대상, 일시, 장소, 면담목적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상의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과 다르게 규정하였거나,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추가한 조문만 위 비교표에 작성하여 송부

□ 주요 개정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기관 송부 근거·절차 마련(안 13조의2)

- 권익위로 접수된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중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 송부 대상 신고사건 : 피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의 내용, 조사의 범위, 제도개선의 검토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조사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 접수 및 신고자 통지, 이의신청, 재조사 요구 등은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관련 규정(제32조)을 준용

< 신설 규정 >

제13조의2(조사기관 송부) ① 행동강령과장은 배정받은 신고사건이 피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의 내용, 조사의 범위, 제도개선의 검토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건을 송부하는 경우에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2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무부처	소속기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방송교류재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결과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부재가 있는가?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법령상 근거 규정이 있는가?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느장 대응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공무원의 행위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해석을 유도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을 저해하는 규정이 있는가?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 국가기관 소속 43개소 / : 공공기관 등 소속 28개소)

기관명 / 소속기관 / 산하기관	교육훈련기관
국회	
· 국회의사무처	의정연수원
감사원	감사교육원
법원	
·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연수원
대통령	
· 대통령비서실	
· 국가안보실	
·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 국가정보원	
·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국무총리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금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인재개발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법제처	법제교육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조달청	조달교육원
· 통계청	통계교육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정사업본부	우정공무원교육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외교부	국립외교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법무부	법무연수원
· 검찰청	
국방부	국방대학교
· 병무청	병무연수원, 사회복무연수센터
· 방위사업청	인력개발담당관실
· 육군	육군교육사령부
· 공군	공군교육사령부
· 해군	해군교육사령부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교육기관)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문화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산림청	산림교육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인재개발원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인재개발원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인재개발원

기관명 / 소속기관 / 산하기관	교육훈련기관
고용노동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인재개발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새만금개발청	
· 한국철도공사	KORAIL인재개발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인재개발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기타	
· 한국방송공사	KBS인재개발원
·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
· 한국여성수련원	한국여성수련원
· 한국은행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
·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

□ 각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시도 소속 27개소 / : 시도 교육청 소속 18개소)

기 관	교육훈련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소방학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부산광역시소방학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인천광역시소방학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 광주광역시소방학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소방학교
강원도	강원도인재개발원, 강원도소방학교
충청북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충청남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충청소방학교
경상북도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경상북도소방학교
경상남도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전라북도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전라남도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교육연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연수원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원

연번	제안 과제명	제안 내용	소관기관
1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20.5.27.)	○(독립윤리위 설치) 외부위원장 포함 과반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	행정안전부 각급 지방의회
		○(윤리조사위 설치) 상설 조사위를 설치하고 의원 징계사항 관련 조사권 부여	-
		○(징계체계 정비)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 안의 처리기한 규정	행정안전부 각급 지방의회
2	지자체 정보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 (’20.5.27.)	○(행정정보공표 조례 규정) 공표 범위·주기· 시기·방법을 조례에 직접 규정	행정안전부 각급 지자체
		○(지자체 지원) 정보공개 접근성 개선 등 행정정보 공표 역량 강화 지원	행정안전부
		○(비공개정보 기준 심의) 정보공개심의회가 비공개 기준의 적정성 심의	각급 지자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외부위원 비율 공개 및 대면회의 원칙	각급 지자체
3	기업 내부감사제도 실효성 제고 (’20.10.29.)	○(상근감사 역량 제고) 감사전문성이나 업무 경력을 갖춘 자를 임명	-
		○(내부감사 지원체계 확립) 감사인의 독립적· 전문적 감사업무 수행 지원	-
		○(내부감사체계 공시) 감사인·지원체계 등에 관한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	-
4	국제 반부패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20.11.20.)	○(권익위)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국 제사회에 적극 전파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의 회의 참여를 통한 반부패 국제표준 파악 ○(학계 및 언론) 회의자료의 학술활동 활용 및 내실있는 회의정보 전달	(완료 과제)

<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개요 >

- '10.10월 개관한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로서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소재
- 부패방지 업무 전문화, 반부패 연구·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우수사례 개발 및 공유, 부패방지 업무 및 부패사건 수사의 효율성 제고 목적

□ '21년도 정규 프로그램 ※ 영어로 진행/한국인은 10% 할인(자기주도 제외)

No	프로그램명	주 제	교육기간	신청기간	비 고
1	반부패 석사과정	반부패 분야 전반	'21.10. ~ '23.12.	~ 8.31	학위과정
2	반부패컴플라이언스 및 공동행동 석사과정	민간분야 반부패	'21.10. ~ '23.12.	~ 8.31	학위과정
3	국제 반부패 여름아카데미	반부패 분야 전반	6월말~7월초 (8일)	추후 공지 (3월경)	올해 온라인 진행
4	강사주도 온라인과정	- 기업자체 조사기법(1.11~2.5, ₩605) - 컴플라이언스담당자 대상 윤리적 제도(1.11~2.5, ₩548) - 가치기반 컴플라이언스와 행동강령 개발(2.22~3.12, ₩425) -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이해(1.25~2.19, ₩570) - 컴플라이언스와 기업매너(대관업무)(1.11~1.29, ₩425) -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경영(2.1~2.26, ₩605) - 반부패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수단(7.5~3주간, ₩425)			- 수료증 발급 - 분기별 과정 추가 개설
5	자기주도 온라인과정	- 저널리즘과 반부패(5.5시간, ₩79) - 윤리와 청렴경영(6시간, ₩79) -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기획 및 이행(1시간, 무료) - 사이버범죄와 전자증거: 非전문가를 위한 기초(6시간, 무료)	상시		- 수료증 발급 - 이 해 총 돌 과정 추가 개설(3월)

※ 자세한 내용은 IACA 홈페이지(www.iaca.int) 'Programmes' 참조

□ 기관 맞춤형 프로그램(Tailor-made Programme)

부패 척결 및 예방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기관·기업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기간, 언어, 장소 등에 대해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프로그램 마련

권익위 커리큘럼 사례	교육기간	교육생
○ 정치 부패, 부패예방, 국가 및 국제 우수사례 소개 ○ 비엔나 소재 국제기구 및 반부패 기관 방문	'18.5.31~6.6	24명

※ 자세한 내용은 IACA 홈페이지(www.iaca.int) 'Programmes' > 'Tailor-made Training' 참조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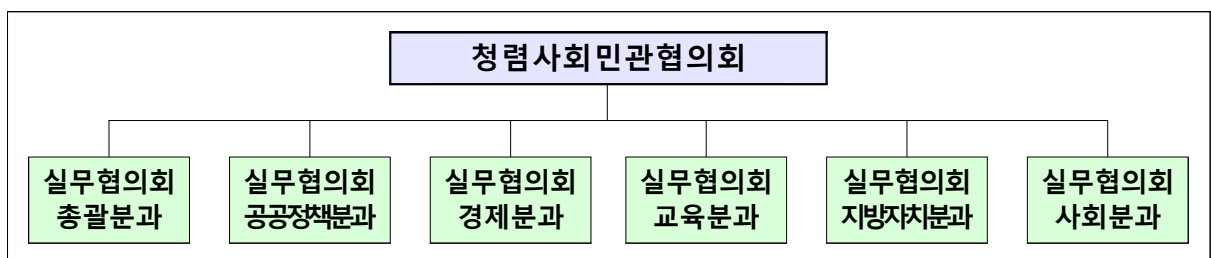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40인 이내로 구성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아젠다를 상시 발굴·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 현원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32명, 실무협의회 내 분과협의회 각 14명 내외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국민권익위원장/민간: 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로 개편하여 의원의 윤리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 및 징계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의 외부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독립 윤리위원회로 개편한다.
2.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외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설 윤리조사 위원회로 개편하여 조사활동과 윤리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의원 징계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부여한다.
3. 광역·기초 지방의회에 각 의회의 규모에 비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의 외부위원과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4.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징계안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 회의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2020년 5월 27일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제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헌법 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 한다.

1.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행정정보 공표의 범위와 주기·시기 및 방법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규칙에 포괄위임하는 사례를 파악·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접근성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정보 공표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가 그 세부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심의회 외위원 비율을 공개하는 한편, 정보 공개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5월 27일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기업 내부감사제도 실효성 제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기업의 내부통제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장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내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1. 감사 최고책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관련 전문성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경력 등 내부감사 역량을 갖춘 자를 임명하도록 권고한다.
2.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전문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부감사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한다.
3. 내부감사 체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전문성·업무경력 등 자격요건 충족 현황과 내부감사 지원 체계 현황을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권고한다.

2020년 10월 29일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국제반부패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 민·관 협력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관 합동 반부패 국제포럼인 국제반부패회의의 개최를 환영하고 지지하면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정부와 사회 각계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전파하고 반부패 분야의 국제동향과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직능 단체는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내부감사·윤리경영·국제협력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회의 참여를 장려하여 반부패 국제표준을 파악하고 국제교류·협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반부패 논의동향과 국가별 정책사례, 관련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향후 국내 또는 국제 부패방지 분야의 학술 연구 활동에 활용한다.
4. 언론은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 각계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보도,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회의정보를 전달한다.

2020년 11월 25일

제

임

1.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요약표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공직사회 행위 기준 마련			
①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 사항 제출	제·개정안 초안마련 후	공직유관단체
		제·개정 완료 후	전 공공기관
②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4월/10월	해당 기관
③	행동강령 조례 미제정 지방의회 현지 방문 컨설팅 협조	연중	해당 기관
④	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이행실태 점검 시 자료제출 등 협조	연중	해당 기관
⑤	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기관 송부 시 조 사 실시 및 결과 통보 등 협조	연중	해당 기관
⑥	소속 공직자 대상 행동강령 자체 교육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⑦	부패취약시기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 강화	연중	전 공공기관
⑧	행동강령 관련 실태조사 제도개선안 이행	연중	해당 기관
2.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①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설명회 참석	연4회	해당 기관
②	소속·산하기관, 직무관련자 등에 법 주요내용 확산	수시	전 공공기관
③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 서면점검 자료 제출, 현지방문 협조	서면(1월)	전 공공기관
		현지(하반기)	해당 기관
④	부적절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 자료 제출, 의견 청취 등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의 협조	수시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3.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확대			
①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통보에 따른 자료·의견 제출	3월	측정·평가대상 공공기관
②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템)에 부패방지 우수시책 등록	~3.31	'20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③	'20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실적 제출	~3.31	측정·평가대상 공공기관
④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에 따른 자료 제출	7~8월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⑤	현지점검 대상기관 선정 통보에 따른 점검사항 협조 (청렴도 측정 : 상·하반기, 부패방지 시책평가 : 하반기)	상·하반기	측정·평가대상 공공기관
4.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예방기능 강화			
①	기관별 권고 이행현황 자체 점검결과 제출	반기별	전 공공기관
②	맞춤형 이행지원 필요기관 컨설팅 수요 제출	5월	해당 기관
③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④	반부패 현안과제 모니터링에 따른 이행조치계획 제출요청시 조속한 조치계획 및 최종 이행결과 제출	연중	해당 기관
⑤	대외신인도 관련 분야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연중	전 공공기관
5. 부패·불공정 현안 실태점검 등 대응 강화			
①	부패·불공정 현안 적극 발굴 및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의제 상정 추진	연중	중앙행정기관
②	권익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안 이행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③	부처 자체 이슈의 엄정한 처리 및 필요시 권익위 협업	연중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6.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 강화			
①	정기 전수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등 전수조사 전반에 대해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전수조사 후속조치(비위 연루자 제재, 피해자 구제 등) 및 제도개선 적극적 이행 및 점검 협조(전 공공기관)	연중	전 공공기관
7.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①	공공기관 사규 점검 시, 자료제출 및 개선안 이행 협조	연중	해당 기관
②	자체 부패영향평가 시, 소극행정 유발가능성도 검토	연중	전 기관
8.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추진			
①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및 사례 적극 홍보	수시	전 기관
②	공공재정지급금 관리 강화	수시	전 기관
③	부정청구 발생 시 법적 조치사항 이행	발생시	전 기관
④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 자료입력	3~4월	전 기관
⑤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2~12월	해당 기관
⑥	제도개선 의견 제출	~3월	전 기관
9.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			
①	각급기관 자체 교육원 청렴교육 편성	수시	전 공공기관
②	고위공직자, 소관 선출직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강화	수시	전 공공기관
③	청렴연수원 운영 교육 과정 참여 및 청렴콘텐츠 적극 활용	수시	전 공공기관
④	'20년도 교육운영 실적 청렴e시스템 입력(제출)	통보시	전 공공기관
⑤	'21년도 신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부패방지 의무교육 등 안내 및 교육	연중	해당 기관
⑥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적극적 홍보 및 참여	연중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0.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①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책제안 해당기관 적극 검토	연 중	해당 기관
②	기관별 청렴실천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적극 전개	연 중	전 공공기관
③	공공기관 협력사 상생워크숍 시 윤리경영 교육실시 협조	연 중	전 공공기관
11. 국제사회에 청렴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각인			
①	UN반부패협약 2주기 이행점검 관련 자료제출 및 회의 참석	3월 이후	해당 기관
②	G20 행동계획 등 반부패라운드 이행관련 자료 제출	연 중	해당 기관
②	반부패기술지원 사업 관련 강의 및 관련 자료제출 협조	연 중	해당 기관
③	국제 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프로그램 홍보 협조	연 중	전 공공기관
12.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및 홍보			
①	기관별 공익신고 관련 홍보물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내용 반영·최신화	연 중	전 공공기관
②	공익신고기관 릴레이 간담회 수요 제출	2월 예정	중앙부처
③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제명변경·분법·통합·폐지 등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개정 시 타법개정 협조	법 개정시	해당 중앙부처
④	제도 홍보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홍보 협조	연 중	전 공공기관
⑤	공익신고제도 운영현황 자료 제출	~2월	해당 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3. 신고 활성화로 부패·공익침해행위 발생 차단			
①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 홍보	수시	전 공공기관
②	조사기관에 신고사건 이첩·송부 시, 신속한 조사처리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 협조 요청	수시	해당 기관
③	이첩사건에 대한 소청·소송 등에 따른 실질적·최종적인 조사결과 제출 요청	수시	해당 기관
14.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①	보호조치 결정 등 위원회 결정사항 이행	수시	해당 기관
②	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	상시	해당 기관
③	부패청탁 및 공익신고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분기별	전 공공기관
④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금의 적기 납부	상시	해당 지자체
1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①	비위면직자등 취업시 사전 확인 활성화 및 지원 강화	수시	전 공공기관
②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③	공공기관 채용규정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 규정 및 채용공고문 등에 명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④	취업제한제도 교육·홍보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⑤	비위면직자등 명단 관리 철저 및 발생 현황 통보 * 상·하반기 비위면직자등 명단 취합시 제출기한 엄수	연중	전 공공기관
⑥	취업제한제도 위반 여부 검토 철저 및 취업실태 현장점검 협조	연중	해당 기관

2. 부서별 업무담당자

부서명	성명	업무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정책 총괄과	조유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및 감사관 회의 운영,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점검 등	044) 200-7613	044) 200-7939
	김경용		044) 200-7612	
	한건희	청렴교육 현황 관리, 컨설팅	044) 200-7616	
	김일문	청렴컨설팅	044) 200-7615	
행동강령과	한세근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상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도 운영·상담	044) 200-7675	044) 200-7942
	김종호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상담	044) 200-7678	
	정나리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도 운영·상담	044) 200-7670	
청탁금지 제도과	이주현	청탁금지제도 업무 총괄	044) 200-7704	044) 200-7944
	이민이	청탁방지담당관 제도 운영 설명회	044) 200-7705	
	윤수성	법령 개정사항 등 현안 대응	044) 200-7703	
	장성규 허지은	유권해석 질의답변	044) 200-7708 044) 200-7709	
	임재훈	제도 운영 현황 실태점검	044) 200-7707	
	김윤구	청탁방지담당관 제도 운영 설명회	044) 200-7706	
	남궁솔잎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상담	044) 200-7710	
청렴조사 평가과	이진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044)200-7632	044) 200-7940
	연나영		044)200-7636	
	서현우	부패방지 시책평가	044)200-7634	
	한은실		044)200-7638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제도개선 총괄과	추수진	제도개선 기획·총괄	044)200-7221	044) 200-7921
	정희찬	제도개선 사후관리	044)200-7219	
	손상수		044)200-7220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안영정	채용비위 근절업무 기획·총괄	044-200-7300	044) 200-7964
	이동현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 점검 등 실시	044-200-7127	
	최무선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 점검 등 실시	044-200-7291	
부패영향 분석과	민경선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044) 200-7656	044) 200-7941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백인용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043) 901-6112	044) 200-7973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윤소영	청렴교육강사제도(전문과정, 강사관리) 및 외국인 교육과정 운영	043) 901-6142	
	조문제	교육기획(기관협약) 및 교육훈련기관 협업	043) 901-6143	
	조효민	‘청렴한 데이(Day)’ 교육과정 운영	043) 901-6145	
	공면규	기관맞춤형 교육과정 및 청렴라이브 운영	043) 901-6132	
	제명규	청렴엑스퍼트, 신규자·승진자·부패취약 분야 교육과정 및 청렴역량 향상과정 운영	043) 901-6146	
	김덕희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및 콘텐츠 개발	043) 901-6133	
	박종완	지방의회 및 청렴교육강사제도(기본 과정) 운영	043) 901-6148	
	배슬기	교육안내 및 교육생 모집	043) 901-6149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민간협력 담당관실	양용석	청렴문화 확산 공모사업	044) 200-7160	044) 200-7917
	한정운	청렴사회협약 이행 점검·평가	044) 200-7163	
	정은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044) 200-7164	
	박세희	청렴경영 교육과정 운영	044) 200-7166	
	이나현	청렴시민감사관, 모니터단 운영	044) 200-7167	
국제교류 담당관실	강미영	UN반부패협약, 국제반부패아카데미	044) 200-7155	044) 200-7916
	문소희	G20반부패 실무그룹, OECD뇌물방지 협약 이행	044) 200-7158	
	김미란	APEC 반부패실무그룹회의	044) 200-7154	
	변규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044) 200-7152	
심사기획과	박희정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 200-7696	044) 200-7943
	송영희	부패신고 정책 기획	044) 200-7694	
	최지애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운영	044) 200-7695	
	김시형	이첩사건 사후 관리	044)0200	
	우은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 200-7690	
부패심사과	박주완	부패신고사건 사후관리	044) 200-7720	044) 200-7946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김선미	복지·보조금신고사건 사후관리	044) 200-7584	044) 200-7977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공공재정 환수제도과	박종혁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044-200-7642	044-200-7690
	류지호	이행실태 점검	044-200-7643	
	서지만	법령 해석	044-200-7644	
	권나라	교육 및 홍보	044-200-7645	
	한수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044-200-7646	
보호보상 정책과	김옥희	부패·공익신고 교육·홍보, 민간협력	044) 200-7754	044) 200-7948
	전인혜	신고자 보호·보상 법령·제도운영	044) 200-7752	
	이진아	릴레이 간담회	044) 200-7757	
	김건호	공공기관 신고제도 운영현황 조사	044) 200-7755	
신고자 보상과	권문택	부패 보상·포상·구조금 사건 처리	044) 200-7742	044) 200-7947
	김혜진		044) 200-7745	
	이정희		044) 200-7743	
	안병민		044) 200-7744	
	김재은		044) 200-7740	
	김희정		044) 200-7746	
	송원용		044) 200-7748	
공익심사TF	구양미	공익신고사건 사후관리	044) 200-7242	044) 200-7943

[illegible]